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

I. 동의자 현황

(앞 쪽)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	
소유권 현황	토지 (총 필지)	소재지 (공유 여부)		면적(m ²)
		()		
		()		
	건축물	소재지 (허가 유무)		동수
		()		
		()		
	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설정토지		지상권의 내용

II. 동의 내용

1. 신탁업자 현황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정비사업 내용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대지 면적 (공부상 면적)	건축 연면적	규모	비고	
	m ²	m ²			
나. 공사비 등 정비 사업에 드는 비용	철거비	신축비	신탁보수	그 밖의 비용	합계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부담

- 1) 시행규정 및 신탁계약에 따라 경비를 부과·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임시정산하며, 신탁종료 시 정산금을 최종 확정합니다.
- 2) 신탁업자의 시행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시행규정 및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
-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예시)

$$\text{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text{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 (\text{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times \text{비례율}^*)$$

$$* \text{비례율} = (\text{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text{총사업비}) / \text{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

※ 개별 정비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합니다. 다만, 신축 건축물의 배정은 토지소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되, 같은 면적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추첨에 따르는 등 구체적인 배정방법을 정하여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면적별 배분의 기준이 되도록 합니다.

3.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4. 시행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동의서에 포함된 시행규정에 대해 동의하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시행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릅니다.

5. 신탁계약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위의 신탁업자로 지정하는 것에 필요한 신탁계약에 관한 사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동의서에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과 사업이 취소·해지 등의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 사업에 든 비용의 부담 내역과 부담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으며, 신탁계약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은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의 동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의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추진위원회·조합·신탁회사 귀중

신청인 제출서류	1.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